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http://www.geumjeong.go.kr

금정소식

선람	기관의장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2-7 2020. 12. 15.(화)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1호) ---------- 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2호) ---------- 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3호) ---------- 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4호) ---------- 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5호) ---------- 15

고 시

○ 하천점용 허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85호) ---------- 17

회람								

발 행 : 부산광역시 금정구 편 집 : 문화관광과(☎519-40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직무) ① 구의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 받을 수 없다.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공인노무사]

연번	자문 일자	자문 형식	자문내용	회신 일자	회신내용	부서명 (담당자)	비고

※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 미 영

202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1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제8조 중 “헌혈과 관련하여”를 “구 관내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권장사업에”로, “사람 및 단체에게”를 “구민 또는 단체 등에게는”으로, “따라 포상할”을 “따른 포상을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85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온천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재)금정문화재단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금정문화회관 1층(구서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2020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 행사추진

○ 개 요 : 「2020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 청춘B페스타-청년아트갤러리」운영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온천천 어울마당 일원

○ 면 적 : 5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 초 : 2020. 12. 5. ~ 2020. 12. 6.

○ 변 경 : 2020. 12. 19. ~ 2020. 12. 20.